

인천 직무지원형 의지·보조기 클리닉 운영계획(안)

<‘16.8.16(화), 산재보상정책과>

I 배경

- 통합재활훈련 프로그램은 요양 중에 제공되나 직무지원형 재활보조기구 지원사업은 종결 후 지원되어 시너지 창출이 제한되며, 공간적으로 분리된 병원-연구소에 대한 업무개선방안 모색
- 절단 등의 중증 손상 근로자에게 조기부터 심리·사회적 개입을 통한 복귀의지를 고취하고, 의지·보조기 지원을 통한 직장 복귀를 모색

II 현실태 및 개선점

□ 현실태(예산사업)

- (통합재활훈련 프로그램 IRP) 상·하지 절단장애로 요양중인 의지·보조기 착용 환자들에게 통합재활 프로그램 운영
 - (직무지원형 재활보조기구 지원사업) 요양 종결한 장애등급 제12급 이상의 장애인에게 고용촉진형과 고용유지형*으로 구분하여 지급
- * 고용촉진형:신규 발생 산재근로자(10%), 고용유지형: 재직 중인 산재근로자(90%)

□ 개선점

- (지원한계) 현재 직무지원형 재활보조기구 연구·개발 및 보급은 ‘제4차 산재재활 중기발전 세부추진계획’에 따른 예산사업으로 하고 있어 지원한계
- ※ 지원실적:(12년)100명→(13년)140명→(14년,3억4천)154명→(15년,4억)202명

- (직무보조 기능성 품목의 조기 수가화 한계) 개별 의지·보조기의 수가화에는 일정시간이 필요함으로 장해상태와 취업업종의 주 업무 기능에 따른 적합한 의지·보조기의 적기제공 방안마련 필요
 - (직무지원형 재활보조기구 품목 부족) 재활공학소 주도의 품목개발로 의료현장의 요구반영이 부족하고 품목* 다양화 필요
- * 현재 고기능 인공발 등 52품목

Ⅲ 개선방향

- (직무지원형 의지·보조기 지원사업의 수가화) 현 예산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통합재활훈련프로그램(IRP) 및 보장구 지원사업을 통합 재활수가화 하여 직무지원하는 방안 검토
 - 적기의 맞춤형 의지·보조기 지원을 위해서는 품목별 수가개발보다는 「직무지원형 지원프로그램」을 수가화함으로써 품목 다양화 가능
- (직무지원형 의지·보조기 개발) 「재활공학연구소 중장기 발전방안」 마련 시 직무지원형 연구개발계획 논의필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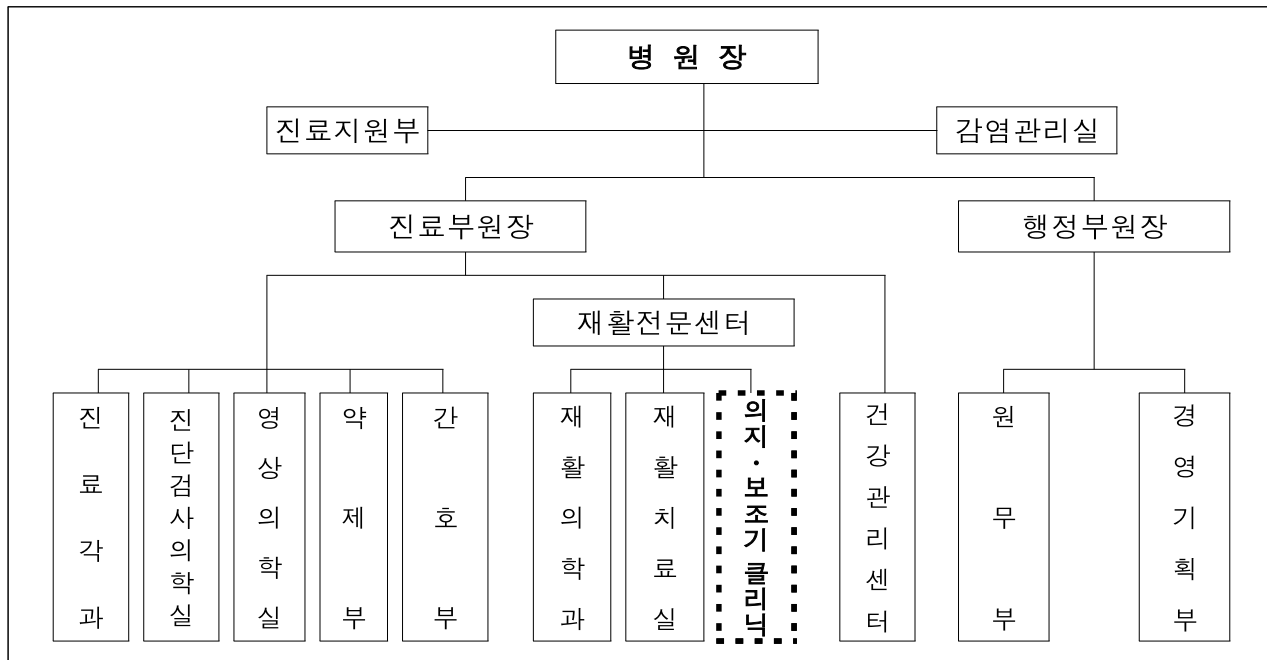
※'17 직무지원형 재활보조기구 연구·개발 및 보급 예산(4억)의 연구비 등 활용방안 마련필요
- (사업대상 단계적 확대) 「직무지원형 의지·보조기 지원프로그램」은 전국 하지환자 및 경인지역 내 상지환자로 대상 우선 시범실시 후 확대

※시범실시 결과에 따라 단계적 인력충원 검토
- (통합관리) 인천병원을 시범기관으로 선정, 「직무지원형 의지·보조기 클리닉」운영하여 지사에서 의뢰한 환자의 초기 보장구 착용, 훈련, 임상평가, 합병증 관리까지 종합관리
- (직장복귀지원강화) 직무지원형 의지·보조기 클리닉 내원한 산재 근로자의 직장복귀 지원서비스에 대한 전담 잡코디 배정

IV 시범사업 운영(안)

○ 조 직

<병원 조직도>



○ 기 능

구분	주요 기능		비고
의지·보조기 클리닉	▪ 의학적 평가	상·하지 절단 통합재활훈련 시작 단계에서 재활의학전문의가 단단부 상태 등을 이학적 검사와 방사선 영상진단검사 등의 진단평가 후 의지처방(재활의학과 전문의)	병원
	▪ 보행평가 및 훈련	보장구 착용 및 훈련, 평가 등 (재활의학과 전문의, 연구직, 물리·작업치료사)	병원
	▪ 보장구제작 (연구소 연계)	신체계측, 장착, 고장수리 등 (보장구제작사)	연구소
	▪ 사회재활	사회생활 복귀를 위한 사회적응상담, 일상생활동작 회복재활 등 (임상심리사, 사회복지사, 직업능력평가사)	병원

○ 업무수행 절차 및 내용

1. 대상발굴 (잡코디네이터)	1-1. 절단 요양승인자(신청자) 명단 산출	(재활국 업무담당자) 1. '손상원인'별 명단 추출 (2주 단위) 2. 대상자 전송
	1-2. 대상자 상담	(지사 잡코디네이터 / 병원 의지·보조기클리닉 행정담당) 1. 상담 대상자 리스트 업 2. 방문 또는 유선 훈련 및 직무지원 프로그램 설명
	1-3. 프로그램 참여 신청서 접수	(업무 담당자) 1. 훈련 및 직무지원프로그램 참여신청서 접수 2. 적정성 확인 (결재권자) 승인처리
	1-4. 향후 직업복귀 의사 확인 (근로자, 회사 양측)	(업무 담당자) 1. 직업복귀 및 계속고용의사 확인서면 제출(근로자, 회사 → 지사) 2. 적정성 확인 (결재권자) 승인처리
	1-5. 직무분석 (체크리스트화)	(업무 담당자) 1. 원직장 복귀 대상자 → 근로자, 회사에 체크리스트 피드백 2. 신규 직무 대상자 → 직무데이터 활용 체크리스트 점검 * 직무별 필요기능 세팅 필요 3. 적정성 확인
	1-6. 전원의뢰/특진의뢰	(업무 담당자) 1. 요청서(평가가능서류 첨부) 전송 2. 대상여부 명확 → 전원의뢰 3. 대상여부 불명확 → 특진의뢰 * 요양자 직접방문시 교통비 지급검토 필요 (결재권자) 승인처리
2. 훈련대상 검토	2-1. 전원의뢰/특진의뢰 접수	(접수담당자(산재담당)/업무담당자(연구원)) ① 전원의뢰 대상자 1. 전원 접수 2. 평가자료 확인 및 보완 ② 특진의뢰 대상자 1. 평가자료 확인 및 보완 2. 특진진료 접수
	2-2. 대상자 적정성 1차 확인	(업무 담당자(사회복지사 또는 직업재활사)) 1. 평가대상 자료 종합 및 사전검토 2. 구직의사 및 분야 사전상담 3. 요구와 평가를 종합적으로 검토 4. 검토 및 1차 평가의견 작성
	2-3. 의지·보조기클리닉 재활의학전문의 검토	(업무 담당자) 1. 1일 10건 검토(매월 첫째주) 2. 2차 평가의견 작성
	2-4. 대상 선별	(업무담당자) 1. 인천병원 진료가 필요한 환자 선별 → 팀평가회의 회부 2. 환자 거주지 인근 소속병원에서 진료가 가능한 환자 선별 → 4.로 이동

		3. 미해당자 → 탈락
3. 전원관련 외래 및 훈련 개시	3-1. 외래진료 및 팀평가회의	(업무 담당자) 1. 한 세션당 환자 8명 진료 2. 회의소집(의사, 치료사, 의지보조기사, 사회복지사) 3. 팀평가회의 결과 도출
	3-2. 직무지원 심의시기 및 훈련방법 결정	(주치의) 1. 직무지원 심의시기 결정 2. 훈련 여부 및 방법 결정(입원/외래)
	3-3. 입원/외래 훈련 및 평가	(치료사) 1. 하지 ① stump maturation 및 마사지 ② core 강화 ③ 하지 등속성 운동 ④ 수중치료 ⑤ 동작분석(주1회) 2. 상지 ① stump maturation 및 마사지 ② core 강화 ③ 상지 등속성 운동 ④ 동작분석(주1회)
	3-4. 심리치료 병행(정신과 협진)	(업무 담당자: 임상심리사) 1. 임상심리평가 2. 재활의지평가 3. 직업자기효능감 평가
4. 전문의 협의체	4-1. 전문의 협의체 소집(월 1회)	(업무 담당자) 1. 협의체 구성 ▶ 외부 전문의 주치의 내부 전문의 3자 협의체 구성 2. 협의회 일정 공지 ※ 심의대상자는 종결 4개월 이상 기간 확보 필요 (제작 1개월, 훈련 3개월)
	4-2. 전문의 협의체 심의	(업무 담당자): 심의내용 안내 1. 훈련중 또는 훈련전 환자의 활동도 평가(K-level 및 기능상태) 2. 직무지원형 지급시기 결정 → 종결 4개월전(제작 1개월, 훈련 3개월) ※ 지급시기는 환자class에 따라 유연하게 결정 3. 의결: 지원, 훈련후 재심의, 거부
	4-3. 직무지원용 보조기 지급시기 결정 통보	(업무 담당자) 1. 의결보고 2. 의결사항의 통보→재활공학연구소, 지사, 재해자
5. 보조기 제작 및 지급	5-1. 보조기 제작 의뢰	(재활공학연구소 의지보조기사) 1. 제작의뢰서 접수 2. 제작승인
	5-2. 보조기 제작	(업무 담당자) 1. 하지: 최소 1개월 이상 소요 2. 상지(미관형): 외주제작으로 3주 소요 3. 상지(기능형): 외주 또는 자체제작
	5-3. 보조기 지급	(업무 담당자)

		1. 제작완료 및 훈련으로 이송, 환자 장착 2. 보조기 체크아웃 및 검수 3. 장착시 불편사항 확인 및 개선
6. 직무지원 후 평가 및 훈련	6-1. 보조기 훈련	(치료사) '3-3. 입원/외래 훈련 및 평가'와 훈련은 동일
	6-2. 직장복귀 프로그램/ 직업훈련 프로그램 병행	(업무 담당자: 직장복귀프로그램 담당 치료사, 사회복지사) 1. 직무지원 보조기 착용 후 작업능력평가 프로그램 시행 2. 작업능력강화프로그램과 연계
	6-3. 직무지원 보조기 사용성 평가	(업무 담당자) 1. 기존 장착보조기와 비교분석 2. 신체기능향상 정도 측정
7. 사후 관리 및 사용성 평가	7-1. 종결 후 직업 상태 추적 관찰	(업무 담당자) 1. 직장복귀 여부, 직업변화 양상 파악 2. 3개월마다 전화로 조사
	7-2. 종결 후 의학적 상태 경과 관찰	(재활의학과 전문의, 담당자) 1. 6개월마다 후유 진료 (인천병원 또는 연고지 소속병원) 2. 상처상태, 낙상, 보조기 상태 파악 3. 3개월마다 전화로 조사
	7-3. 직무지원 보조기 사용성 평가	1. 보조기 사용시 위험 요소 확인 2. 기존 장착보조기와 비교분석 3. 신체기능향상, 직업활동 향상 정도 측정

<참고>

■ 장애유형별 직무지원형 보조기구 지원 대상 품목 : 총 52품목

연번	지급대상 장애유형	장애등급	지 원 품 목
1	하지 절단 (대퇴 또는 하퇴절단) (11종)	1급7호, 2급4호, 4급5호, 5급3호	① 고기능 인공발
			② 직무형 인공발
			③ 발목이단용 인공발(LP)
			④ 기능형 인공발(소형, 여성용)
			⑤ 싸임(Syme) 인공발
			⑥ 발목각도 조절장치
			⑦ 일체형 발목각도 조절인공발
			⑧ 의족용 충격흡수 장치
			⑨ 지면적응형 발목관절 장치
			⑩ 멀티 플렉스 인공발
			⑪ 고하중 작업용 직무형 인공발
			⑫ 맞춤형 라이너 및 슬리브
			⑬ Toeflex 인공발
			⑭ 링크링 인공발
2	하지 절단* (대퇴 절단*) (11종)	1급7호, 4급5호	⑮ 대퇴절단용 소켓라이너(핀타입)
			⑯ 다축공압식 무릎관절 장치
			⑰ 경량유압식 무릎관절 장치
			⑱ 인공지능의지 II (☆)
			⑲ 슬관절이단 무릎관절 장치 (☆)
			⑳ 잠금식 무릎 관절 장치 (☆)
			㉑ 6 링크 유압식 무릎관절장치 (☆)
			㉒ 자동정렬식 하지용 자석락시스템(기계식)
			㉓ 자석락용 대퇴 소켓라이너
			㉔ 자석락용 하퇴 소켓라이너
			㉕ 고기능 고관절장치
			㉖ 의지 충격흡수 장치
			㉗ 경량형 엘라이먼트 어댑터
3	상지절단 (상박, 전박, 수부 절단) (14종)	1급5호, 2급4호, 4급4호, 5급2호	㉘ 근전전동의수
		2급3호, 5급2호	㉙ 손목회전 전동의수
			㉚ 손목이단용 전동의수
			㉛ 스마트폰 터치 의수외피
			㉜ 공구부착 손목모듈(일반작업용)
			㉝ 공구부착 손목모듈(정밀작업용)
			㉞ 농기구 부착 작업용 다기능 상지의지 개발
			㉟ 수중작업용 다기능 상지의지 개발
			㊱ 작업용 맞춤형 다기능 특수 상지의지 개발
			㊲ 전동형 그리퍼 작업의수
			㊳ 자동정렬식 상지용 자석락시스템(기계식)
		3급5호, 6급8호, 7급6호, 8급3호, 9급10호	㊴ 자석락용 상지 소켓라이너
			㊵ 맞춤형 손의지
			㊶ 오염방지 코팅의수
			㊷ 작업용 맞춤형 다기능 특수 상지의지 II

연번	지급대상 장애유형	장해등급	지 원 품 목
4	마비 및 척수장애 (9종)	1급8호	㉔ 기립형 휠체어
			㉕ 수전동 휠체어
			㉖ 기립형 전동휠체어
			㉗ 휠체어 부착형 작업용테이블
			㉘ 작업장용 휠체어 충전시스템
			㉙ 고강도 포터블 경량경사로
			㉚ 경량 전동 휠체어
			㉛ 실내이동기기용 탑승보드
			㉜ 작업용 의자차 II
			㉝ 작업장용 휠체어 경사로

※ 2016년도 신규 7품목 **파란색글씨**